

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가. 제 품 명 : B317

나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
- 권고용도 : 연마용.
- 사용상의 제한 : 용도 외 사용 금지.

다. 제조자/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- 제조회사명 : 태양연마 주식회사
- 주 소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26
- 담당부서 : 태양연마 주식회사 기술연구소
- 전화번호 : 031) 495-6071
- 작 성 일 : 2006. 08. 07
- 개 정 일 : 2021. 12. 30

2. 유해 . 위험성

가. 유해성, 위험성 분류 : 해당없음.

나.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
- 그림문자 : 유해성 분류 해당없음.
- 신 호 어 : 해당없음.
- 유해,위험문구 : 해당없음.
- 예방조치문구
 - 예방 : 해당없음.
 - 대응 : 해당없음.
 - 저장 : 해당없음.
 - 폐기 : 연삭물에 의해 오염된 폐 연마포,지,필름 등은 폐기물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.

다. 유해,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, 위험성

- 눈에 들어갔을 때 : 분진이 충혈을 일으킬 수 있음.
- 피부와 접촉 했을 때 : 피부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분진에 의해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음.
- 흡입 했을 때 : 분진을 장기간 흡입했을 경우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음.
- 먹었을 경우 : 알려진 자료는 없으나 먹지 마시오.
- 긴급한 위험 및 유해성 정보 : 해당사항 없음.

3.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 및 이명(異名)	CAS 번호	함유량(%)
종이	Paper	N/A	20 ~ 60
산화알루미늄	Aluminum Oxide	1344-28-1	20 ~ 40
경화된 페놀수지	Cured Phenolic Resin	9003-35-4	10 ~ 20
탄산칼슘	Calcium Carbonate	1317-65-3	5 ~ 10

4. 응급조치 요령

- 가. 눈에 들어 갔을 때 : 즉시 물과 비누로 충분히 씻어낼 것.
 나. 피부와 접촉 했을 때 :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낸다.
 다. 흡입했을 때
 ①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긴다.
 ② 호흡이 곤란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한다.
 ③ 즉시 의사의 처방을 받는다.
 라. 먹었을 때 : 즉시 응급센터에 연락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
5. 폭발 및 화재시 대처방법

- 가. 적절한(및 부적절한) 소화제 : 일반적인 소화약제를 사용하거나 미세한 물 분무로 살수하시오.
 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: 해당사항 없음.
 다. 화재 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: 물질자체 또는 연소생성물의 흡입을 피하시오.

6.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

- 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: 해당없음.
 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: 해당없음.
 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 : 해당없음.

7. 취급 및 저장 방법

- 가. 안전취급요령 : 해당없음.
 나. 안전한 저장 방법
 ○ 직사광선이 노출되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.
 ○ 땅바닥이나 콘트리트 위에 놓지 마시오.
 ○ 습기가 많은 곳이나 열 발생원을 피하여 보관하십시오.
 ○ 온도는 15℃~27℃, 상대습도는 40%~50%인 장소에 보관하십시오.

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: 해당없음.

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 : 환풍기

○ 국소배기장치 : 대기 중 허용 한계치 이하의 오염물질이 있을 경우 사용.

○ 집진장치 : 대기중 허용 한계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있을 경우 사용.

다. 개인보호구

○ 호흡기 보호 : 방진마스크(지정된 제품), 대기중의 분진이 허용 한계치 이상일 경우 착용.

○ 눈 보호 : 보호안경, 연삭 작업시 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착용.

○ 손 보호 : 보호장갑, 연삭 작업시 손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착용.

○ 귀 보호 : 귀마개, 연삭 작업시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귀마개 착용.

9. 물리화학적 특성

가. 외관	해당사항 없음
나. 냄새	해당사항 없음
다. 냄새역치	해당사항 없음
라. pH	해당사항 없음
마. 녹는점/어는점	해당사항 없음
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	해당사항 없음
사. 인화점	해당사항 없음
아. 증발속도	해당사항 없음
자. 인화성(고체, 기체)	해당사항 없음
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	해당사항 없음
카. 증기압	해당사항 없음
타. 용해도	해당사항 없음
파. 증기밀도	해당사항 없음
하. 비중	해당사항 없음
거. n-옥탄올/물 분배계수	해당사항 없음
너. 자연발화 온도	해당사항 없음
더. 분해 온도	해당사항 없음
러. 점도	해당사항 없음
머. 분자량	해당사항 없음

10. 안전성 및 반응성

가. 화학적 안정성 : 안정함.

- 나. 유해 반응의 가능성 : 해당사항 없음.
다. 피해야 할 조건 : 해당사항 없음.
라. 피해야 할 물질 : 강산, 강염기 및 강한 산화제는 제품에 변형을 주어 제품 사용시 기계적 성능이 떨어지게 할 수 있음.
마. 분해시(연삭시) 생성되는 유해물질 : 분진이 발생되어 냄새가 날 수 있으나 집진기를 통해 대부분 제거 될 수 있음.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- 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- 호흡기를 통한 흡입 : 자료 없음.
 - 입을 통한 섭취 : 자료 없음.
 - 피부 접촉 : 자료 없음.
 - 눈 접촉 : 자료 없음.
- 나.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,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
- 급성 독성 : 자료 없음.
 -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: 자료 없음.
 -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: 자료 없음.
 - 호흡기 과민성 : 자료 없음.
 - 피부 과민성 : 자료 없음.
 - 발암성 : 자료 없음.
 - 생식세포 변이원성 : 자료 없음.
 - 생식독성 : 자료 없음.
 - 특정 표적장기 독성물질(1회 노출) : 자료 없음.
 - 특정 표적장기 독성물질(반복 노출) : 자료 없음.
 - 흡인유해성 : 자료 없음.

- 다. 독성의 수치적 척도(급성 독성 추정치 등) : 자료 없음.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- 가. 수생/육생 생태독성 : 자료 없음.
나. 잔류성 및 분해성 : 자료 없음.
다. 생물 농축성 : 자료 없음.
라. 토양 이동성 : 자료 없음.
마. 기타 유해 영향 : 자료 없음.

13. 폐기시 주의사항

- 가. 폐기 방법 : 연삭물에 의해 오염된 폐 연마포, 지, 필름 등은 폐기물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한다.
나. 폐기시 주의사항 : 제8항의 노출관리 및 개인보호구 정보를 참조하여 처리하시오.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- 가. 유엔번호(UN No.) : 해당없음.
나. 유엔적정선적명 : 해당없음.
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: 해당없음.
라. 용기등급 : 해당없음.
마. 해양오염물질 : 해당없음.
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: 해당없음.

15. 법적 규제 현황

- 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: 자료없음.
나.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자료없음.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자료없음.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지정폐기물.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 ○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: 자료없음.
 ○ EU 분류정보 : 자료없음.
 ○ 미국 관리 정보 : 자료없음.
 ○ 로테르담 협약 물질 : 해당없음.
 ○ 스톡홀름 협약 물질 : 해당없음.
 ○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: 해당없음.

16. 기타 참고사항

- 가. 자료의 출처
 ○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MSDS(<http://www.kosha.or.kr>)
 ○ 화학물질의 분류,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(노동부고시 제2008-29호)
 ○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검색시스템(<http://ncis.nier.go.kr>)
나. 최초작성일자 : 2006.08.07
다.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 : 2021.12.30(4차)
라. 기타
 ○ 본 국문 MSDS는 현재의 알려진 지식, 경험 및 관련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제품자체를

- 완전히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.
- 본 국문 MSDS를 태양연마(주)의 사전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재판매, 한글 이외의 제 3국어 번역은 저작권에 관련된 국내외 법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음을 주지 바랍니다.
 - 국내 관련 규제법규 현황은 본 제품의 용도나 알려진 성분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국내 관련 규제법규 현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.